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7
------------	-----

2019년 4월 25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19. 3. 29. 박순규 의원 발의 (2019. 4. 3. 회부)

##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서울시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시 조례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타사광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사광고에 대한 실명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 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포함하는 한편, 실명제 표시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법 시·도 조례 표준(안)」(2016.9.19.)에 적합하도록 자사광고를 포함시키고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26조 1항)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법 시·도 조례 표준(안)」(2016.9.19.)에

적합하도록 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광고물 실명제 서식을 추가함(안 제26조 2항, 별지 제2호 서식)

- 현실적으로 실명제 표시 위치가 불가능한 광고물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광고물의 형상을 고려하여 개선함(안 제26조 3항)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법 시·도 조례 표준(안)」(2016.9.19.)에 따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4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실명제에 자사광고를 추가하고 실명제 표시방법 및 관리·운영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2019년 3월 29일 박순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이하, 표준조례안, 붙임1)을 토대로 광고물 실명제 대상과 표시방법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임.

#### “광고물 실명제 대상”

- 광고물 실명제는 실제 광고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모바일·전자적방식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의 차단과 허가·신고된 광고물의 설치·관리 적법성 등 점검을 통해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제도 취지가 있음.

- 자사·타사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광고물 실명제를 운영 중인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시는 타사광고만을 대상으로 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실명제 대상을 자사광고까지 확대하여 불법광고물의 차단과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허가·신고 배제대상인 5㎡미만 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도시빛정책과) 상황에서, 광고물 실명제에 자사광고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타사·자사광고)이 전체 광고물의 20~30%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입법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 광고물 허가·신고대상 및 자치구 불법광고물 현황(자료: 도시빛정책과)

- 관리대상 평균 : 18.2%(허가+신고+요건구비)
- 비 관리대상 평균 : 81.8%(허가·신고 배제+요건불비)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배제
<u>&lt;벽면이용간판&gt;</u>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u>&lt;벽면이용간판&gt;</u>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	<u>&lt;벽면이용간판&gt;</u> •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
각 유형별 개수 및 구성비는 파악되지 않음(도시빛정책과: 자료 확인 불가)		

구별	총계	적법광고물 현황( '12)			불법광고물 현황( '12)		
		허가	신고	허가·신고배제	요건구비	요건불비	비율(%)
중구	52,551	1,164	1,172	8,455	9,182	32,548	79.4
광진	53,351	666	951	8,901	6,157	36,676	80.2
노원	53,211	1,737	743	5,215	8,768	36,748	85.5
양천	46,071	1,350	685	14,018	4,826	25,192	65.1

- 광고물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허가·신고대상에 자사광고 포함 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법령 개정을 통해 허가·신고 배제대상을 포함한 모든 광고물에 광고물 실명제를 적용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광고물의 통계는 수작업 전수조사에 의존하고 있고 정기적인 조사도 수행되지 않아 기본적인 통계마저 부재한 실정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서울행정시스템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관리대장 기능이 있기는 하나 지자체의 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서, 정보화·고도화사업을 통한 광고물 관리기능의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광고물 관리 고도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서('08)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sup>1)</sup>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시도한 바 있으나, 매년 전수조사가 어렵고 업무과중 및 민원발생 등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괄 행정조치가<sup>2)</sup> 사실상 불가능하여 세입 증대<sup>3)</sup> 외에는 양성화 효과가 낮고, 행정안전부 서울행정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진단된 바 있으므로,

---

1)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라벨(Label), 카드(Card)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임

2) 전수조사 → 적법·불법 확인 → 요건구비 추진허가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 세외수입 증가 : 허가·신고 수수료 + 도로점용료 + 이행강제금

- 불법광고물 정비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대집행

3) 대부분 60% 이상 세외수입 증대(광주광역시 서구 68%(89백만원 → 130백만원), 남구 63%(82백만원 → 130백만원))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광고물 관리 고도화의 세밀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과 서울행정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서울시의 대외적 노력도 적극 요구된다 하겠음.

###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

- 이 외에도, 이 개정조례안은 실명제 표시 위치를 변경하고, 서식을 신설하여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명제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실명제 부착 위치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기타 광고물 실명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대체로 표준조례안의 관련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실명제 표시 위치를 아래부분으로부터 160cm 높이의 오른쪽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실명제 인증마크를 보고자 하는 주체가 일반 시민보다는 주로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굳이 시선 높이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필요가 없음으로 이해되며, 서식 신설은 실명제 표시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6조(광고물 실명제)</b> ① 법 제16조에 따라 <u>타사광고는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상 표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실명제 표시는 <u>모바일로</u>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위치·규격·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p> <p>③ 실명제 표시의 위치는 광고물등의 <u>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b>제26조(광고물 실명제)</b> ① -----            --- <u>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u> &lt;삭 제&gt;</p> <p>② ----- <u>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 -----</u>            -----,            -----.</p> <p>③ -----            -- <u>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 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u></p> <p>④ <u>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u></p>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26조제2항 관련)



[예시]

---

비고  
(예시)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2. 표시내용 : '201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

## [붙임1] 관련법령 및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18.12.2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2. 삭제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18.12.26.)**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